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응급실 뽕뽕이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14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김선민·이해민·김재원
신장식·차규근·황운하
서왕진·정춘생·이주희
강경숙·김준형·박은정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뽕뽕이’ 사건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의료
인력 부족, 수용 거부 관행, 이송 체계의 불일치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이러한 사망사
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조사체계가 부재하여, 개별 사건의 근본
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과거 영국에서는 2003년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아동의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 주도로 전문가들이 2년여간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토대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례가 있음.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한 독립적인 조사 체계가 절실함. 이는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정부의 응급의료 관리체계의 허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응급실 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의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기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발생 원인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예방·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응급실 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응급실 뽕뽕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는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청·명령,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27조까지).

라. 응급실 뽕뽕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망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 분석, 관련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조치 권고,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등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8조).

마.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이행내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9조).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이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거부되거나 이송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응급의료 제공 지연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건(2

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으로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응급실 뽕뽕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을 말한다.

제2장 응급실 뽕뽕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치)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응급실 뽕뽕이 예방·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응급실 뽕뽕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
2.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원인 조사 및 분석
3.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
4. 응급실 뽕뽕이 예방·근절을 위한 응급의료 제공 관련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 조사·분석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7명(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긴급구조·응급의료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위원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⑦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

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위원회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제11조(위원의 겸직 및 정치활동금지)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발생에 직접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

한 사람으로서 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사망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이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조사 및 청문회

제19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조사개시 결정을 위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에 관계 기관 · 시설 · 단체 등에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 · 시설 · 단체 등에 대한 사실 · 정보 조회
5.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학대 현장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6.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개인 · 기관 · 시설 ·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 제130조제1항, 제131조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 시설 · 단체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위원회로부터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시설·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시설·단체 등의 장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가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자료 또는 물건을 열람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 위원회가 제9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5 및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21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

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사망자 유족(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청문회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 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

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2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이행 점검

제28조(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①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6개

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 분석
2.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조치 권고
3.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4. 위원회의 활동기간 만료일 이후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 조사·분석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별도의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와 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사망자, 조사대상자, 참고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이행실태 확인·점검 등) ①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3개월 이내에 그 수용 여부

및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이행 완료 시까지 이행내역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관련 법률 제·개정 시 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준수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그 밖에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사람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사망자·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

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감정인
2. 제20조제7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감정인

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7.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망자,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2.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정보의 조회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회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려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 사무국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의 제·개정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